성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5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우리 군에 맞는 위기상황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해소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기상황의 기준(안 제2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 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나. 예산조치 : 148,363천원 정도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 8. 11 ~ 2015. 8. 3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의 기준을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의 기준)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만 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건강보험료 등 기타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수해, 산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긴급복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